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5가단69019 부당이득금반환 |
| 원 고 | 1. A |
| | 2. B |
| 피 고 | 부산광역시 |
| 변 론 종 결 | 2016. 2. 5. |
| 판 결 선 고 | 2016. 3. 25. |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,653,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가. 원고 A은 2003. 3. 5. 설립된 주식회사 C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기장군 D의 소유자이고, 원고 B은 위 토지와 접한 E의 소유자이다.

나. 원고들은 위 두 토지 위에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을 짓기로 하고, 원고 A이 2012. 2. 건축사 F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다. 원고들은 2012. 4. 18.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위 건물(최초 1개 동으로 신청하였다가, 2013. 4.경 3개 동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변경허가를 얻었다. 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의 건축허가를 얻었고, 2014. 4. 17. 착공하여 2014. 5. 19. 사용승인을 받았으며,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각 1/2 공유자로 등록까지 마쳤다.

라. 원고들은 2014. 6. 26. 및 2014. 7. 16.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, 동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신고(이하 '이 사건 신고행위'라 한다)를 하였다.

마. 피고는 2014. 7. 16.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1/2 지분 취득자임을 전제로 납부기한을 2014. 7. 18.로 정하여 원고별로 취득세 12,915,160원, 지방교육세 738,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.

바. 원고들은 2014. 7. 18. 위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.

**[인정 근거]**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4호증, 을 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회사가 설계·감리 비용을 F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삼토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. 따라서 원래 위 회사가 취득세 납부의무의 주체이다. 그러나 건축사 F의 업무 착오로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고,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게 되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다.

원고들은 가산세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것인데, 이러한 신고 및 납부행위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이어서 하자가 있고,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는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, 원고들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.

**3. 판단**

**가.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여부**

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된다. 앞서 보았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,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, 사용승인 모두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점, ② 원고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이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건축사 F의 착오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(오히려 건축허가 후 변경허가도 이루어졌고, 을 2 내지 4호증 등 관련 공문이 원고들을 수신자로 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, 자신들 명의로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원고들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), ③ 원고 A이 자기 이름으로 설계·감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,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다만 갑 3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4. 8. 28.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, 원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회 기일에 바로 변론종결되어 2014. 10. 23.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,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2015. 4. 14. 취득세 등 29,823,700원을 고지 받아 2015. 4. 30. 이를 납부하였고, 건축물대장에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나, 이는 처분권주의·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, 이 사건에서 취득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 따라서 하자의 중대·명백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**나.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(가정적 판단)**

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,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.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, 의미,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).

다만,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,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(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).

앞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,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, 사용승인, 건축물 대장에의 소유자 등록 등 일련의 과정이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진 점, ② 신축건물의 취득을 이유로 한 취득세 신고는 실무상 매우 흔한 것으로,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다른 많은 사안들과 달리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무가 정립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선 유발이 불가피하였던 사안도 아닌 점, ③ 누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인지는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쟁점인 점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,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.

결국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, 피고가 납부받은 취득세 등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.

**4. 결론**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11-23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흥록